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등 행정처분 강화(안 [별표 23]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최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·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,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선
가격표 미게시, 가격표대로 요금 받지 않는 경우	▲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	▲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식품접객업소 가격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